

	취업지원운영위원회규정	규정번호	5-0-16
		제정일자	2012.11. 1
		개정일자	2026. 7.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의 취업지표 향상 모색 및 취업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업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취업처장으로 하며,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4.10.6., 2016.1.1., 2020.3.1., 2021.3.1., 2023.9.1., 2026.7.1.)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6., 2015.9.1., 2016.1.1., 2017.4.1., 2020.3.1., 2021.3.1., 2023.9.1., 2027.7.1.)

제3조(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업지표 향상 모색 및 취업 기본정책 수립
2. 취업관련 사업계획 및 취업지원 운영에 관한 평가 및 개선 조치 등 환류에 관한 사항
3. 취업교과목 개발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및 지도
4. 삭제 <2016.1.1>
5. 주요 기업체 취업관련 홍보
6. 기타 취업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